

취득단가 200만원 이상 GPU(그래픽카드)

구매요청 및 자산등록 대상 안내

(2026...08.28 연구관리팀)

■ 관재팀-2922 (2026.08.10.) 「교내 전산 부품 및 GPU 자산 등록 처리 기준 안내」 관련,

■ GPU등 전산 부품의 자산 등록 여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연구자께서는 연구비로 전산 부품 구매시, 품목과 단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매요청+자산등록 또는 소모품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명	자산등록여부	구매절차
취득 단가 200만 원 이상인 GPU(그래픽카드)	○	구매요청 → 검수 → 자산등록(물품번호 부여)
기타 컴퓨터 부품 (CPU, RAM, SSD)	X	직접구매(소모품 처리)

※ 취득 단가 200만 원 미만이라도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GPU로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산등록 가능함.

※ GPU, CPU 및 개별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여 하나의 완제품(조립PC 등)을 구축 했다면, 해당 부품으로 조립한 PC는 자산 등록 대상임

■ 취득단가 200만원 이상 GPU 구매시 주의사항

- 연구장비와 동일하게 구매요청 및 자산등록 절차를 통해 구매해야 함
- 용도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기자재) 또는 연구활동비(비품) 항목으로 구매 (재료비X)

비목	용도
연구시설장비비(기자재)	연구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 전용 컴퓨터 (서버용 컴퓨터, 연구장비에 연결하는 장비(기자재) 운영용 컴퓨터 등)
연구활동비(비품)	범용성(사무용, 논문작성용 기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컴퓨터)

■ (관련 규정) 「2025.07.01. 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주장비의 정상 가동 및 성능향상을 위한 부품”도 연구장비로 정의함

2.2.1 연구장비의 구성

- 연구장비는 일반적으로 주장비, 보조장치 그리고 부대장비로 구성되며, 연구장비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주장비를 결합하거나, 주장비와 보조장치, 또는 주장비와 부대장비 등으로 구성되기도 함
 - 주장비란 추가적인 부대장비 없이도 본래의 구축 목적에 맞는 활용 및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장치
 - 보조장치란 주장비의 성능향상이 아닌 본래 주장비의 구축 목적에 따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보조물·부속물
 - 부대장비란 주장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주장비의 기본 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운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

이에 따라 우리대학도 고가의 GPU 등을 핵심 관리 부품(고가, 성능)으로 지정하여 자산으로 관리함 (기존 소모품에서 자산으로 변경)